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온실가스”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 안 제9조 제2항 제2호 “기후변화업무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개정안과 같음) 3. “온실가스”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생략) ② ----- -----, 1. (생략) 2. 기후변화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3. (생략) ③ (생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개정안과 같음) ② ----- -----, 1. (개정안과 같음)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라 함은 「기상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라 함은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제2장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국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4.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출자배당금
5.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용자
6. 노후된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의 교체비용에 대한 용자
7. 연료전환 목욕탕시설에 공급하는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
8. 압축천연가스 시내버스충전소 설치 및 이에 따른 배관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용자
9.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용자 또는 보조 대상 및 절차 등) ①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을 용자 또는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사업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연구·조사·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5조제2호의 사업 :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5조제3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 가.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 나.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라.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 마.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의무화 지원
 - 사. 신·재생에너지관련 국제협력
 - 아.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학술활동 지원
4. 제5조제4호의 사업 :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 ② 제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용자받을 수 있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 ③ 그 밖에 용자 또는 보조의 절차·한도액·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 ③ 기금운용관은 담당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용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과장

-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3. 기후변화 대응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화사업,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기후변화 업무 소관부서의 기금 운용·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용자금 또는 보조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금리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 (기금의 용도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용자를 받은 것으로 보며, 용자를 신청하여 용자 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